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- 481호

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89호(2017.3.16.)로 결장·고시된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

정비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대	36,473	-

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: 2022.11.24.까지
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

3.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1)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92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- 482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99호(2017.11.16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58호(2018.08.16)로 실시계획 고시된 “금호로 확장공사(금호동1가 506-3~526)”와 관련하여,
2. 「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하고,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506-3 ~ 526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－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

－ 명칭: 금호로 확장공사(금호동1가 506-3 ~ 526)

다. 사업의규모(변경없음): 도로확장 폭15m→20m, 연장 70m

라. 사업시행자(변경없음): 서울특별시장

마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)

－ 당초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. 12. 31.까지

－ 변경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1. 6. 30.까지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:생략(변경없음)
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도로계획과(☎2133-8083) 및 성동구청 토목과(☎2286-576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